



### 심의결과통보서

수 신 : 채 수 천 귀하

연구과제명 : 대장염 및 대장암에서 MIR375 기능과 그 표적유전자와 상호작용 규명

신청접수일 : 2017. 03. 17.

심의 일자	2017년 3월 23일
심의대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구계획서(신규) <input type="checkbox"/> 연구계획서(보완) <input type="checkbox"/> 연구계획서(변경) <input type="checkbox"/> 설문지 <input type="checkbox"/> 피험자동의서 <input type="checkbox"/> 피험자 모집광고 <input type="checkbox"/> 기타 피험자에게 제공되는 문서 <input type="checkbox"/> 증례기록서 <input type="checkbox"/> 중간보고서 <input type="checkbox"/> 결과보고서 <input type="checkbox"/> 중지 또는 조기종료보고서 <input type="checkbox"/> 승인된 연구계획서(지속 심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 <u>서면동의면제신청서</u>
심의 결과	<input checked="" type="checkbox"/> 승인 <input type="checkbox"/> 수정 후 승인 <input type="checkbox"/> 보완 <input type="checkbox"/> 반려 <input type="checkbox"/> 승인된 연구의 중지 또는 보류
연구승인번호	WKIRB-201703-BR-012
승인 유효기간 (총 연구기간)	2017년 03월 23일 - 2018년 03월 22일
지속심의주기 (정기보고주기)	<input type="checkbox"/> 3개월 <input type="checkbox"/> 6개월 <input type="checkbox"/> 1년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연구 종료 후 보고)
심의 결과에 대한 사유 및 의견	<p>1. 연구에 사용이 기 동의된 '원광대학교병원 인체유래물은행'에서 조직을 분양받아 이용하고, 시판되는 인체 유래 세포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연구자가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개인정보를 알 수 없으므로 인체유래물 수집 절차 및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p> <p>이러한 연구 방법 이용 연구는 본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면제 사항에 해당되어 심의를 면제하고 연구계획을 승인합니다.</p> <p>2. 아래의 연구자 준수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p>



\* 연구자 준수사항

1.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연구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해야 합니다.
2. 연구대상자로부터 동의를 획득하여야 하는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동의서 및 설명문을 사용하고, 강압이나 부당한 영향이 없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충분한 설명에 근거하여 적법한 동의를 획득하여야 합니다.
3. 연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수행하여야 합니다. 단,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연구를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즉시 해당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4. 연구로 인해 연구대상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연구를 일시중지 시키거나 조기종료 시키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5. 위원회가 연구에 대해 조사하거나 감독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기타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연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6. 승인 유효기간 만료 전에 중간보고를 하여 지속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7. 연구와 관련된 기록은 연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2017년 03월 23일

원광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인)

